(사업방법서 별지)

1. 보험종목의 명칭

보험계약 변경 정산액 분할납입 특약

2. 적용대상 계약

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.

- (1)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자적립액의 차이가 발생하고, 이에 따라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한 계약
- (2) 이 특약의 적용대상 정산액이 10만원 이상이면서 분할납입금액이 1천원 이상 인 계약
- (3) 이 특약의 적용대상 정산액이 해당 계약의 정산액 발생시점 해약환급금 이하인 계약
- (4) 주계약이 자동갱신되지 않는 계약
- (5) 단체취급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
- (6) 정산액 발생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의 잔액이 없는 계약
- (7)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계약

3. 적용대상 정산액 및 분할납입금액에 관한 사항

- (1) 이 특약의 적용대상 정산액은 해당 계약에서 정산액이 발생한 주계약 또는 특약 각각의 정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자동갱신되는 특약의 정산액은 제외한다.
- (2) 이 특약에서 정하는 분할납입금액 및 최종분할납입금액은 이특약의 "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"에 따라 산출한다.
- (3) 이 특약을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분할납입기간 중 중도에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직전 분할납입금액 납입일 시점부터 일시납입 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비용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.

4. 분할납입기간에 관한 사항

- (1) 이 특약에서 분할납입기간은 계약의 잔여 납입기간과 5년 중 긴 기간 이내로 운영한다. 다만, 계약의 잔여 보험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분할납입기간을 계약의 잔여 보험기간 이내로 한다.
- (2) 이 특약의 체결 시점에 정해진 분할납입기간은 그 이후에 다시 변경할 수 없다.

5. 기타

이 특약의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용대상계약의 사업방법서 별지를 따른다.